

재산관리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 공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산관리규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3.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 장 박 현 출 (인)

ㄱ 규정 제 351 호

ㄴ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산관리규정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 사유

- 가락몰 업무동 임대 활성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임대요율로만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공인감정기관의 적정 임대료 평가가격으로도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규정 개정 추진

2. 개정 내용 : 재산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제23조(임대료 등) ①항 수정
 - ① 재산의 연간 임대요율은 당해 재산의 평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인감정기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평가액으로 연간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
- 제23조(임대료 등) ②항 신설
 - 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을 무상으로 하거나 그 요율을 낮추어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비영리법인 포함)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3.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공사에서 정한 연간 임대료 또는 낙찰받은 시설의 연간 낙찰 금액을 선납한 경우<신설 2015.6.8>
 5.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임대시설 관리상 필요하여 사장이 정하는 경우
- ②항을 ③항으로 변경
 - ③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재산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합산한 것으로 하며, 부지의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되 바닥면적 이외에 당해 건물에 전용되는 인근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부지면적에 포함한다.

3. 참고 사항

- 제안 근거 : 생략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합의 필
- 절 차 : 사전예고 후 담당부서 심의를 거쳐 사장이 확정
- 기 타 : 1.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재산관리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산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임대료 등)에 관한 제1항 수정, 제2항 신설, 제2항 신설로 인한 제2항을 제3항으로 조항을 변경한다.

① 재산의 연간 임대료율은 당해 재산의 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인감정기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평가액으로 연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

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을 무상으로 하거나 그 요율을 낮추어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비영리법인 포함)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3.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공사에서 정한 연간 임대료 또는 낙찰받은 시설의 연간 낙찰금액을 선납한 경우<신설 2015.6.8>
5.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임대시설 관리상 필요하여 사장이 정하는 경우

③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재산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

을 합산한 것으로 하며, 부지의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되
바닥면적 이외에 당해 건물에 전용되는 인근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부지면적에 포함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3조(임대료 등)</p> <p>① 재산의 연간 임대료율은 당해 재산의 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0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율을 낮추어 대여할 수 있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비영리법인 포함)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p> <p>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p> <p>3.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4. 공사에서 정한 연간 임대료 또는 낙찰받은 시설의 연간 낙찰금액을 선납한 경우<신설 2015.6.8></p> <p>5.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임대시설 관리상 필요하여 사장이 정하는 경우</p> <p>②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재산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합산한 것으로 하며, 부지의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되 바닥면적 이외에 당해 건물에 전용되는 인근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부지면적에 포함한다.</p>	<p>제23조(임대료 등)</p> <p>① 재산의 연간 임대료율은 당해 재산의 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0이상으로 한다. <u>다만, 공인감정기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평가액으로 연간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u></p> <p>② <u>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을 무상으로 하거나 그 요율을 낮추어 대여할 수 있다.</u></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비영리법인 포함)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p> <p>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p> <p>3.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4. 공사에서 정한 연간 임대료 또는 낙찰받은 시설의 연간 낙찰금액을 선납한 경우<신설 2015.6.8></p> <p>5.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임대시설 관리상 필요하여 사장이 정하는 경우</p> <p>③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재산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합산한 것으로 하며, 부지의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되 바닥면적 이외에 당해 건물에 전용되는 인근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부지면적에 포함한다.</p>